

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5. 1. 3.>

정근수당 지급구분표(제6조제1항 관련)

1. 정근수당

근무연수	지급액	근무연수	지급액
2년 미만	월봉급액의 10% 해당 금액	8년 미만	월봉급액의 35% 해당 금액
5년 미만	월봉급액의 20% 해당 금액	9년 미만	월봉급액의 40% 해당 금액
6년 미만	월봉급액의 25% 해당 금액	10년 미만	월봉급액의 45% 해당 금액
7년 미만	월봉급액의 30% 해당 금액	10년 이상	월봉급액의 50% 해당 금액

2. 정근수당 가산금

근무연수	월지급액	비고
	전 공무원	
20년 이상	100,000원	(추가 가산금) ·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,000원을,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15년 이상 20년 미만	80,000원	
10년 이상 15년 미만	60,000원	
5년 이상 10년 미만	50,000원	
5년 미만	30,000원	

비고

- 가.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.
- 나.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